성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3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취지

생활수준의 향상과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이 늘어나고, 소송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각종 소송과 이의신청 등에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 규정(안제3조)
 -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관한 사항
 -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
 -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
○ 임기 : 2년, 재위촉 가능
○ 자문사항기록부 기록 : 자문의뢰사항 기록(안제5조)
○ 매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 지급(안제6조)

3. 조례(안)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: 2003. 9.1 ~9.20(20일간), 제출의견 없음
○ 예산관련사항 : 1인당 연 1,800천원 ~ 2,400천원정도 예산 소요
○ 경상북도내 고문변호사 현황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는 성주군고문변호사(이하 "고문변호사"라 한다)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명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자문사항)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2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
3.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

②고문변호사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 대리인으로 수임받을 수 없다.

제4조(위촉기간)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재위촉할 수 있다.

②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(자문사항기록부 비치) 군수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사항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당)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사 건 실 적 부

구분 / 종 류	사 건 명	의 뢰 년월일	의 뢰 내 용	회 신 년월일	회 신 내 용	비고
소송사건						
이의신청						
행정심판						
법령해석						
기 타						